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4항 중 “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”을 “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모품 대장, 도서대장”을 “도서대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“품종구분 기준” 중 (1) 비품 ②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(안)
제 8 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물품은 매입·수리·</u> <u>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</u> <u>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</u> <u>매입·수리·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</u> <u>여야 한다.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·</u> <u>수리·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</u> <u>하다.</u>	제 8 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물품을 매입·수</u> <u>리·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</u> <u>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</u> <u>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</u> <u>요구하여야 한다.</u>		
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 (생략)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<u>장부상 취</u> <u>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</u> <u>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</u> <u>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</u> <u>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⑤~⑧ (생략)	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장부상 취 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.....		
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은 규 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	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		

현	행	개	정	(안)
1.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		1.		
2.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		2.		
3. 물품카드 등록부		3.		
4. <u>소모품대장</u>		4.	(삭 제)	
5. 도서대장		5.		
② 분입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, 중요물품 이력카드, <u>소모품대장, 도서대장</u> 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 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“정수물품”이란 고 무인을 찍어야 한다.		②	 도서대장.....	
[별표 1] 물품의 품종, 상태 구분		[별표 1] 물품의 품종, 상태 구분		
○ 물품의 종류(생략)		○ 물품의 종류(현행과 같음)		
○ 품종구분 기준		○ 품종구분 기준		
(1) 비품-① (생략)		(1) 비품-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		② 10 만 원	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(2) 소모품(생략)		(2) 소모품(현행과 같음)		
○ 물품상태 분류기준(생략)		○ 물품상태 분류기준(현행과 같음)		